#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0월 24일 행정·재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6월 1일

나. 발 의 자: 신찬호 의원 외 5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: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10. 24.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신찬호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 증진을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□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
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예비군법」, 「예비군법 시행령」

나. 협조부서: 행정지원과

다. 입법예고(2023. 6. 1. ~ 2023. 6. 9.)

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#### 가. 제정 취지

○ 본 조례안은 「예비군법」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강서구 거주 예비군 훈련 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의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

## 나. 주요 내용

- **안 제1조**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 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함
  - **안 제3조**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

#### 다. 종합 의견

○ 「예비군법」제14조의3제1항은 "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작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・지원하여야 한다."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 지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

○ 또한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는 "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, 그 밖에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"을 예비군의 육성·지원으로 정하고 있음

○ 우리구 예비군 대원의 수는 29,452명(2023. 10월. 기준)<sup>1)</sup>으로 대원들의 훈련장 입·퇴소 편의제공으로 사기진작은 물론 예비군훈련 교육효과 극대화로 지역방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 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<sup>1) 「</sup>예비군」용어 정의

<sup>-</sup> 전시, 사변 등의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병력을 말하며, 예비군은 예비역 장교, 준사관, 부사관의 경우 현역군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, 예비역 병 및 보충역의 경우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달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한다

# 8. 수정안의 요지

## 가. 수정이유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음

## 나. 수정내용

○ 안 제2조제1호 중 "박달과학화예비군훈련장"을 "52사단이 관할하는 예비군 훈련장"으로 한다.

원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훈련장"이란 <u>박달과학화예</u>	1 <u>52</u> 사단이 관할하
<u>비군훈련장</u> 을 말한다.	<u>는 예비군 훈련장</u>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
# 붙임

## 관계 법령

## □ 「예비군법」

- 제14조의3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② 예비군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 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## □ 「예비군법 시행령」

- 제32조(예비군의 육성·지원)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・운영 및 유지
  - 2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
  - 3.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
  - 4.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 및 전투 시설 지원
  - 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,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,
  -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-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,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하다.